

##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1993. 1.

발 의 자 : 충청북도지사

### 제안이유

행정능률 향상과 행정사무 간소화를 위하여 도사무중 일부를 시장·군수·출장소장에게 위임.

### 주요골자

- 보건과 소관
- 환경관리과 소관
- 위생과 소관
- 내수면어업과 소관
- 산림과 소관
- 교통행정과 소관
- 도시계획과 소관
- 치수과 소관

### 첨부

1.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2. 소관별 자치법규 정비 요약서, 신규조문대비표, 관계법규발췌 각 1부

##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보건과 소관 위임사무를 별지와 같이한다.

(별표)중 환경보호담당관실 소관 위임사무를 삭제하고 환경관리과 및 환경지도과 사무를 다음과 같이한다.

분 야 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환경관리과	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설정	.학교 보건법시행령제3조
환경지도과	1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내의 .특정공사 사전신고	.소음진동규제법제25조

(별표)중 위생과 소관 위임사무를 별지와 같이한다.

(별표)중 내수면어업과 소관 위임사무를 별지와 같이한다.

(별표)산림과 소관 위임사무 일련번호 제20호중 다목 "천연보호림의 지정 및 해제"를 "천연보호림등의 지정 및 해제"로 하고 제24호 및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4. 조수보호구의 설정

- 가. 조수보호구 및 특별보호구의 설정
- 나. 조수보호구 및 특별보호구의 설정 또는 해제고시
- 다. 조수보호구역 안에서의 이용개발 행위
- 라. 손실보상

### 25. 조수보호원의 자격 및 임명, 해임

- 가. 조수보호원의 임명
- 나. 명예조수보호원 위촉
- 다. 조수보호원증 및 명예조수 보호원증 발급과 대장 비치
- 라. 조수보호원 및 명예조수보호원의 해임 및 해촉

(별표)교통행정과 소관 위임사무중 일련번호 제3호 기계식주차장 인정사무의 근거법령  
 "주차장법제12조"를 "주차장법제6조"로 하고 "동법시행규칙제4조3항을"을 "동법  
 시행규칙제6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도시계획과 소관 위임사무중 일련번호 제6호 다음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7호내지 제15호를 제8호내지 제16호로 한다.

분 야 별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도시계획과	7	국가등이 행하는 토지 등의 거래계약 협의에 관한사항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9제1항제29조

(별표)치수과 소관 위임사무중 일련번호 제7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 야 별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치 수 과	78	하천면입용지보상(내수 및 소유권 이전)	하천법 제74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 표 )

부 야 명	번호	사 쿠 명	근 거 범 령
보 건 과	1	◦ 상명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	전염병예방법 제 8조
	2	◦ 전염병에 관한 경제적 건강진단 명령	동법 제 9조
	3	◦ 제 1종 전염병 예방시설의 설치	동법 제 23조
	4	◦ 제 1종 전염병 예방조치	동법 제 39조
	5	◦ 제 1종 전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동법 제 42조
	6	◦ 결핵예방 접종에의 유예신고	결핵예방법 제 17조
	7	◦ 예방접종 증명서의 교부	동법 제 18조
	8	◦ 의원등 개설신고 (비영리의료기관 제외)	의료법 제 30조 제 3항
	9	◦ 의료기관의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	동법 제 33조
	10	◦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필요한 상황 보고 명령 및 시설등의 검사	동법 제 49조
	11	◦ 의료기관시설 사용제한, 금지, 시정명령	동법 제 50조
	12	◦ 의료기관의 개설, 장소이전, 개설신고 사항의 변경신고	동법시행규칙 제 22조 제 2항
	13	◦ 등 신고필증의 교부	동법시행규칙 제 22조 제 3항
	14	◦ 조산소의 지도의사 신고 및 변경신고	동규칙 제 25조
	15	◦ 의료기관의 의료업정지, 허가취소, 폐쇄 명령	동법 제 51조
	16	◦ 등 업자의 자격정지	동법시행령 제 21조 및 간 호부조원 의료유사업자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 17조
	17	◦ 등 업자의 등록대장 및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	"
	18	◦ 등 업자의 자격증 재교부	"
	19	◦ 등 자격증의 반환, 회수, 환부	"
	20	◦ 등 업자의 시술소의 개설 및 변경신고	"
	21	◦ 등 시술소의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	"

분 야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보 건 과	22	◦ 등 시술소의 실적보고	등법시행령 제21조 및 간 호법시행령 제21조 및 간호 및 안과사예 관한 규칙 제17조
	23	◦ 등 자격증의 갱신신청	"
	24	◦ 의료추락	"
	25	◦ 한약업사의 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허가	등법 제35조
	26	◦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등 판매업자의 등록 취소 및 영업을 정지명령	등법 제69조
	27	◦ 약국제재의 제조품목 신고	등법 제33조
	28	◦ 의약품등의 검인	보사부훈령 제261호
	29	◦ 약업사, 한약업사, 매매상의 허가대장 비치 및 영업허가증 교부	등규칙 제22조
	30	◦ 등 영업소의 이전허가	등규칙 제24조
	31	◦ 한약업사 영업소 이전허가	약사법시행규칙 제24조
	32	◦ 의약품등 판매업 등록 또는 허가증 갱신	등규칙 제50조
	33	◦ 제조업자의 영업소 등록	등규칙 제31조
	34	◦ 의약품 도매상 허가신청	등규칙 제45조
	35	◦ 의료기사 실패와 취업상황에 대한 신고 수리	의료기사법 제10조
	36	◦ 항정신성 의약품 취급자 (도매업자 관리자에 대한 다음사항) 가. 도매업자 또는 관리자의 지정 및 지정 사항 변경 나. 지정서의 교부 다. 업무의 휴업, 폐업, 재개업신고 라. 지정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	항정신성의약품 제8조  등법 제9조, 등법시행 규칙 제9조  등규칙 제23조  등법 제35조
	37	◦ 항정신성의약품 도매업자의 판매대상자 와 판매승인	등법 제18조

분 야	구 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보 건 과	38	◦ 향정신성의약품 사고보고	제법 제 27조, 동시행 규칙 제 27조
	39	◦ 자격상실자의 향정신성의약품 처리	제법 제 28조
	40	◦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의 강제수용과 치유	제법 제 31조
	41	◦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자에 대한 보고명령 검사 및 수거	제법 제 33조
	42	◦ 향정신성의약품의 폐기명령	제법 제 34조
	43	◦ 소지 향정신성의약품의 신고 수리	제법 제 28조
	44	◦ 향정신성의약품 감시원의 임명	제법 제 36조 제 2항
	45	◦ 마약취급자 (소매업자, 관리자)에 대한 다음사항	
		가. 마약취급자 면허	마약법 제 7조
		나. 면허증고부와 등록	제법 제 8조
		다. 등록사항 변경	제법 제 11조 제 2항, 동시행규칙 제 6조
		라. 면허증 재고부	상 등
		마. 마약취급자의 등록말소	제법 제 11조 제 1항
		바. 업무의 폐지신고	제법 제 10조 제 2항
		사. 마약취급자의 사망, 무능력자가 된 때의 신고처리	제법 제 10조 제 3항
아. 업무보고 명령		제법 제 52조	
자. 면허취소와 업무정지		제법 제 53조	
46	◦ 사고마약의 보고처리	제법 제 15조	
47	◦ 자격상실자의 마약처리	제법 제 16조	
48	◦ 공사립병원을 격리병사 또는 진료소로 대용 지정하는 권한	전염병예방법 제 25조	
59	◦ 위생분야 중사자들의 건강진단 의료기관 지정	위생분야중사자의 건강 진단규칙 제 7조	
50	◦ 의약품판매업(도매상) 폐업신고	약사법 제 35조 제 2항 동시행규칙 제 54조 제 4항	

분 야 별	대응 항목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보건과	51	◦ 안마시술소의 행정처분	의료법 제 30조 제 3항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 9조 및 제 12조
	52	◦ 안마시술소에 대한 지도관속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 8조
	53	◦ 소독업허가 및 변경허가	전염병예방법 제 40조의 3
	54	◦ 소독영업의 휴업·재개업·폐업 신고수리	등법 제 40조의 4
	55	◦ 소독업 영일정지 및 허가취소	등법 제 40조의 8
	56	◦ 소독업자에 대한 기타 행정처분	소독관리업무처리규정 (보사부훈령 제 6조)
	57	◦ 의약품판매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	약사법 제 35조
	58	◦ 의약품판매업 업무정지 및 허가취소	등법 제 69조
	59	◦ 의약품판매업 허가증 갱신	등법시행규칙 제 50조 제 1항
	60	◦ 소독 대행업소 허가	전염병예방법 제 40조의 3 및 동시행규칙 제 20조의 2
	61	◦ 예방접종 공고	결핵예방법 제 15조
	62	◦ 의료기관 세탁물처리업소 지정	의료법시행규칙 제 27조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정 제 5조 및 제 16조

분야별 연령 번호	사 무 영	근 거 법 령
위생과	1 ○ 조리사 면허증 교부 및 재교부 (다만, 면허증 최초교부 시도와 현주소지의 시도가 다른 경우의 재교부는 최초교부 시도에서 교부하고 '83.7이후 교육기관 이수후 면허증을 발급받은 자는 최초교부 당시의 주소지의 시군구에서 재교부 함)	식품위생법 제36조, 동법시행규칙 제46조 및 제47조
	2 ○ 이.미용사 면허증 교부 및 재교부 (다만, 면허증 최초교부 시도와 현주소지의 시도가 다른 경우의 재교부는 최초교부 시도에서 교부하고 '83.7이후 교육기관 이수후 면허증을 발급받은 자는 최초교부 당시의 주소지의 시군구에서 재교부 함)	공중위생법 제9조 동법시행령제17조 내지 제20조
	3 ○ 식품등으로 기인된 사체의 해부	식품위생법 제68조
	4 ○ 이.미용사 면허취소 및 업무정지 (다만, 면허증 최초교부 시도와 현주소지 시도가 다른 경우의 면허취소와 업무정지는 최초교부한 도에서 관장함)	공중위생법 제23조 제2항
	5 ○ 병.통조림 제조업 관리중 가. 영업허가 및 변경허가  나. 품목제조허가 및 변경허가  다. 휴업.재개업.폐업 및 변경신고  라. 조건부 영업허가  마. 영업의 승계  바. 품질관리 및 보고  사. 시정명령  아. 폐기처분등  자. 시설의 개수명령등  차. 허가의 취소등  카. 품목제조허가의 취소등  타. 폐쇄조치 등  파. 청문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53조  동법제22조 제3항  동법 제22조 제4항  동법 제23조  동법 제25조 제3항  동법 제29조  동법 제55조  동법 제56조  동법 제57조  동법 제58조  동법 제58조  동법 제62조  동법 제64조



분야별	입법 연차	사 무 명	근거 법령
위생과		<p>하. 과징금처분</p> <p>거. 과태료 부과징수</p> <p>6 ○ 조리사 면허취소 (다만, 면허증 최초교부 시도와 현주소지의 시도가 다른 경우는 최초교부한 도에서 면허취소함)</p> <p>7 ○ 조리사 면허증의 반납 (다만, 면허증 최초교부 시도와 현주소지의 시도가 다른 경우의 면허취소자는 최초 교부한 시도에 면허증 반납)</p>	<p>동법 제65조</p> <p>동법 제78조</p> <p>동법 제63조</p> <p>동법시행규칙제48조</p>

분야별 연호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내수면 어업과	1	어선의 등록, 등록사항 변경 및 등록취소	어선법 제9조, 제14조, 제15조
	2	어선 총톤수 측정 및 개축 (총톤수 5톤 미만의 어선에 한함)	동법 제13조
	3	조업제한의 결정(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에 한함)	동법시행령 제13조
	4	호출부호 지정	동법시행규칙 제11조
	5	어선원부의 등본, 사본과 열람등	동법시행규칙 제23조
	6	어선 건조 개조의 발주허가	동법 제5조
	7	선박 국적증서등의 검인	어선법 제10조, 동법시행규칙 제27조
	8	지구별조합의 감독상 필요자료 요구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제22조
	9	수산시설의 사후관리 및 지도감독	수산시설관리규정 제5조
	10	수산시설의 목적외 사용,양도,교환,대여,담보 제공및 주요시설의 변경 승인	수산시설관리규정 제7조
	11	수산 동,식물 채포금지 해제허가(양식어업, 제1종 공동어업용 중요)	수산자원보호령 제15조 제1항 제1호
	12	어선현장 확인업무	어선법 제8조
	13	항해의 신고	동법 시행령 제4조
	14	임시 항해의 신고	동법 시행령 제30조
	15	청문에 관한 권한	동법 제29조의 2
	16	선박국적고시등의 무효고시	동법 시행규칙 제34조

##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보건과 소관)

### □ 개정사유

1. 가. 약사법의 명칭과 동일하게 정리  
나. 일련번호 재정비  
다. 민원인 편의도모
2. 의료기사법·의료법에 따라 개정
3.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개정 ('91.12.14)에 따라 개정

### □ 주요골자

1. 가. 약종상·한약종상의 명칭변경(약업사, 한약업사)  
나. 제조업자 영업소 등록 및 의약품도매상 허가신청 업무를 시군으로 위임
2. 의료기사실태와 취업상황에 대한 신고수리의 업무를 시·군으로 위임
3. 공중보건의 직장이탈금지와 복무감독권한이 법률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서 시군구로 명시됨에 따라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를 삭제하려는 것임
4. 의료기관 세탁물처리업소 지정업무를 시·군으로 위임

### □ 관계법령등 참고사항

1. 약사법(1971. 1. 31. 법률 제2279호)부칙 제2항 제3항 및 동규칙 제31조·제45조
2. 의료기사법 제10조
3.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91.12.14. 법률 제4430호 전부개정)제8조 및 제14조
4. 의료법시행규칙 제27조

### □ 첨 부

1. 신구조문대조표 1부
2. 관련법규 발췌 1부

# 신구조문 대비표

현				개			
행				정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보건과	29호	약증상·한약증상· 판매약상의 허가	부사부 규칙		29호	약업사·한약업사· 매약상의 ----- ----- 영업	부사부 규칙
		대장비치및허가증 교부				허가증 -----	
		30-2				한약업사 영업소 이전허가	
	31호	의약품등 판매업 등록 또는 허가증 갱신	동규칙 제 50조		32호	----- -----	동규칙 제 50조
	33 - 35호	( 신 설 )			33호	제조업자의 영업소 등록	동규칙 제 31조
					34호	의약품 도매상 허가신청	동규칙 제 45조
					35호	의료기사실태와 취업상황에 대한 신고수리	의료기사 법 제 10조
	36호 39호	( 삭 제 )			36호	항정신성 의약품 취급자 (도매업자 관리자 에 대한 다음 사항) 가.도매업자 또는 관리자의 지정사항 지정사항 변경	항정신성 의약품관리 법 제 8조

행				안			
분야별 법령	번호	사무영	근거 법령	분야별 일련 번호	사무영	근거 법령	
보건과					나. 지정서의 교부	동법 제 9조 동법 시행 규칙 제 9조	
					다. 업무의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	동규칙 제 23조	
					라. 지정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	동법 제 35조	
				37호	향정신성의약품 판매업자의 판매 대상자와 판매 승인	동법 제 18조	
				38호	향정신성의약품 사고보고	동법 제 27조, 동시행규칙 제 27조	
				39호	자격상실자의 향정신성의약품 처리 ( 삭제 )	동법 제 28조	
	58호	공중보건의 업무 감독 및 근무지 이탈허가	상 어촌 보건의료 특별조치 법 제 3조 및 제 13조	58호	의약품 판매업의 업무정지 및 허가 취소	약사법 제 69조	
	62호	( 신설 )		62호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소 지정	의료법시 행규칙 제 27조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정 제 5조 및 제 16조	